#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04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정을호·이기헌·김남근

오세희 • 이훈기 • 백승아

조승래 · 김준혁 · 김동아

서삼석 · 천준호 · 차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 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 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 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대학언론) ①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의 발행 및 편성
-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9조의4(대학언론) ①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
	(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의
	<u>발행 및 편성</u>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
	하여야 한다.
	④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
	<u>한다.</u>